

수원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래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 선고 2019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25,363,030원, 피고 D은 84,100,1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원고의 예금계좌로부터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각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 또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 7, 9, 11, 15 내지 17, 19, 20, 22, 24 내지 2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송금받아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가 2018. 5. 22. E로부터 안성시 G, H 토지 및 지상 M센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며 절세 등의 목적으로 E에게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재산도 보유하지 않은 원고를 F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F는 원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원고를 사용하기로 하고, 2018. 6. 25. 원고의 대표이사를 피고 B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8. 7.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이미 영농종합법인 N를 가지고 있어 원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F에게 넘겨주었고, 원고를 넘기면서 따로 금전거래를 한 것은 없으며, 그냥 준 것이다. 원고는 법인만 살아 있고 버섯을 키워서 판매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처 O가 90%, 아들 P이 10%를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 발행 주식은 F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3) F는 2018. 8. 14. 및 같은 달 20. Q조합과 R조합에서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 B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8. 6. 25.부터 2019. 8. 22.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입금 일시(기간)	입금 금액	입금 상대방
1	2018. 8. 22.	280,690,000원	N영농조합법인
2	2018. 9. 21. ~ 2019. 4. 30.	290,439,960원	S(주)
3	2019. 1. 11. ~ 2019. 7. 26.	408,483,000원	T(주), U영농조합법인, V(주)

① 순번 1은 E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이 운영하던 N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입금받은 것이고, ② 순번 2는 F가 W와 S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동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입금받은 것이며, ③ 순번 3은 F가 X와 농업회사법인 T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버섯재배 등 사업을 동업하며 자금을 입금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입금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돈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E은 F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처와 아들 명의로 보유하던 원고 주식을 이용하여 2019. 8. 21. 피고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처 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20. 2. 3. W에게 원고를 양도하였다.

W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문제 삼아 F와 피고들을 업무상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1. 12. 22. 이 사건 각 돈이 원고 소유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F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5) 피고 B는 F가 운영하던 I조합의 직원으로 F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원고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F가 피고 B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관리한 이상 피고 B가 이 사건 송금행위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 C는 여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F에게 버섯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피고 D은 F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 C, D이 F와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송금받은 점, 당시 F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F와 E, W 및 X과의 관계에서 입금된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나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돈이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횡령이나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금전취득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